



# 철도용품 공사규격서

베이스플레이트  
Baseplate

KRCS A009 02

확인 2009.02.16

## 1. 적용범위 및 분류

### 1.1. 적용범위

이 규격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선로에서 목침목 코일스프링형 레일체결장치에 사용하는 베이스플레이트에 대하여 적용한다

### 1.2. 분류

1.2.1. 50kg.N 레일용

1.2.2. 60kg.K 레일용

## 2. 적용자료

KS, KRS, 관련법령 및 한국철도공사 관련규정

## 3. 필요조건

### 3.1. 재료

재료는 KS D 3503(일반구조용 압연강재) SS400 또는 KS D 4302(구상흑연 주철품) FCD 450-10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

### 3.2. 형태

형상치수 및 허용차는 한국철도공사 도면(550-5020)에 의하고, 허용차가 없는 치수에 대해서는 표준치수로 하되 KS 일반공차에 의한다

### 3.3. 제조 및 가공

제조 및 가공에 소요되는 설비는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공정을 자동화하여 소정의 정밀도로 제작할 수 있어야 하며, 계측에 필요한 설비는 정확하게 교정하고, 제조공장에는 제조 후 완제품을 검사 및 시험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

3.3.1. 재질은 균일하여야 하고 유해한 흠 및 덧붙임이 없어야 한다

3.3.2. 표면은 평활하고 나사 스파이크 구멍은 정확히 제조 가공하여야 한다

3.3.3. 레일좌면 및 침목접촉부는 평활하여야 한다

3.3.4. 절단 및 가공으로 인한 침목접촉 모서리부의 날카로움은 삭정하여야 한다

3.3.5. 제품에는 적당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

### 3.4. 성능 및 외관 등

베이스플레이트는 레일체결장치와 상호 조합되어 성능을 발휘하는 구조적인 특성상 각 제품이 도면의 허용치 이내라 하더라도 제품이 레일에 체결된 상태와 동일한 조건대로 취부하여 그 틀림량이 건설교통부 선로정비지침의 레도공사 마감기준의 허용한도 범위 이내여야 한다

## 4. 검사 및 시험

물품검사공무원은 자체 검사 및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국내·외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거나, 제작자 또는 외부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 및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, 그 시험결과 이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

## 4.1. 검사

### 4.1.1. 검사의 분류

- (1) 겉모양 검사
- (2) 치수검사

### 4.1.2. 검사방식과 수준

- (1) 겉모양 및 치수 검사는 한국철도공사 도면 및 본 규격에 의하여 시행한다
- (2) 겉모양 및 치수검사는 5,000개를 1로트로 하여 30개를 임의추출 시행한다

## 4.2. 시험

### 4.2.1. 시험의 분류

- (1) 기계적 성질시험
- (2) 굴곡시험(구상 흑연 주철품 한)

### 4.2.2. 시험방법

- (1) 압연제품은 제품 5,000개를 1로트로 하여 3개의 시료를 임의 채취, KS D 3503(일반구조용 압연강재)의 내용에 의하여 기계적성질 시험을 시행한다
- (2) 구상흑연 주철품은 제품 10,000개를 1로트로 하여 3개의 시료를 임의 채취, KS D 4302(구상흑연 주철품)의 내용에 의하여 기계적성질 시험을 시행하고, 굴곡시험은 KS B 0804(금속재료 굽힘시험)에 의하여 30°로 굴곡 시행한다

## 4.3. 결점 및 불량분류

4.1.의 검사 및 4.2.의 시험결과 이 규격에 적합할 때 합격으로 하며, 이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로트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. 다만, 불합격된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할 수 있으며 이때 시험 수량은 최초 시험 수량의 2배수로 한다

## 5. 포장 및 표시

### 5.1. 포장재료

10# 철사

### 5.2. 포장방법

제품 2개를 1조로 하여 10# 철사로 양쪽 나사스파이크 구멍을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

### 5.3. 표시

제품의 턱 외측 잘 보이는 곳에 레일종별, 제작년도, 제작자명 또는 약호, 한국철도공사 휘장을 양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